

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92번
----------	-------

2020년 6월 18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- 라. 상정결과 :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20년 6월 18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유연식)동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2020년 3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(1) 사업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2) 사무내용
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
-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
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
- 패션·봉제산업 지원사업
-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
- 디자인의 국·내외 교류사업
-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다. 추정개요

(1) 추경예산 : 541,827천원

※ 총 출연금액 : 34,881,827천원 (기정 출연금액 : 34,340,000천원 포함)

(2) 추경필요성

- 재단이 관리수탁하고 있는 DDP는 설립 이래, 시설 임대료, 대관료 등

-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해 왔으나,
- 코로나19관련 우리시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」 정책에 따라,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%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음.
 - 여기에,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객 감소,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DDP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면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한 손실 보전액 541,827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

(3) 출연금 편성 내용

- DDP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: 시설관리비, 시설위탁비, 안전관리사업비 지원

(4)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 개요)

- 1)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(옛 동대문운동장 부지(65,232 m^2))
- 2) 규모 : 총 면적 86,574 m^2 , 지상 4층, 지하 3층
- 3) 개관일시 : '14. 3. 21
- 4) 전경 및 위치도



- 5) DDP 시설 현황 : 5개 공간 18개 시설

알림터	알림1관, 알림2관, 국제회의장, 복합문화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조산업의 런칭 페드, 디자인 포럼 • 디자인·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, 패션쇼, 콘서트, 시사회, 공연 등
배움터	디자인박물관, 디자인전시관, 디자인둘레길, 디자인놀이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·미래로 전파·전승 • 디자인·패션 전문 전시,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
살림터	살림1관, 크레아, 디자인샵 디자인라이브러리, 잔디사랑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·공유, 창조산업 지식·정보 제공 •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, 시민 디자인·브랜드 체험
공 원	갤러리문, 이간수문전시장, 동대문 역사관, 동대문운동장기념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규모 디자인·문화 전시 및 이벤트,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 •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
디자인장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남과 휴식, 방문객 편의지원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(2020.3.3.-시장방침제41호)

- 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- 2) 손실분 및 환급분 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경과

- 1) 공공 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시장방침 수립 : '20.3.3
- 2)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: '20.3.26
- 3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: '20.3.31
- 4) 코로나19 피해 관련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 : '20.4.28
 - 「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」 으로 일괄 상정, “적정”으로 심의 통과
 - 재산관리부서가 지원기준에 따라 자체 임대료 감면 확정 및 승인

라. 감면규모 : DDP 입점업체 24개소

(단위 : 천원)

감면대상	감면임대료(A) (사용료50%)	감면관리비(B)	총액(C) (C=A+B)	비고
24개소	489,637	52,190	541,827	

※ 감면대상 업체

- 1)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하고 피해사실 입증가능한 경우
 - 소 기 업 :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, 음식점업등 평균매출 10억이하
 - 소상공인 : 소기업 기준 +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10명 미만, 그 외 업종 : 5명 미만)
- 2) “다중이용시설”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마 . 예산조치 : 2020년도 3차 추경 편성

바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 3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출연의 필요성

- DDP는 초기 설립계획 시 <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 역사문화공원> 재산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>에 따라 재정자립 수준을 100%로 설정하면서, 수익목표의 미달성 분을 지출 축소와 전기이월금 투입을 통해 수지를 맞추는 방식 등으로 재정자립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.

< “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 역사문화공원” 재산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>

제10조(관리비 부담 및 집행)DDP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이 수탁재산을 활용하여 발생시키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가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.

- 코로나19 이후 DDP는 문화시설 폐쇄 및 상반기 행사 취소,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으로 자체수입의 93%에 해당하는 인프라수입(임대·대관·주차)이 대폭 감소하였고 그와 연동한 기타 수입 또한 감소 추세로 6월 말까지 현재 수준으로 시설 운영 시

당초 목표대비 50억원의 미수납이 예상되고 있음.

〈 DDP 운영사업 자체수입 미수납 상세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예산	수납예상액	미수납액	사유
합 계		15,750,155	10,751,155	4,999,000	
인프라	임 대	6,480,368	5,311,368	1,169,000	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른 감소
	대 관	6,908,787	4,039,787	2,869,000	6월까지 행사 취소 반영
	주 차	1,300,000	601,000	699,000	매출 전년도 대비 30% 이하 급감
브랜드	광 고	300,000	134,000	166,000	전반기 광고촬영 행사 모두 취소
	투 어	60,000	35,000	25,000	2월말 이후 투어 진행 전면 취소
	브랜드상품	100,000	69,000	31,000	DDP스토어 현재 매장 폐쇄 중
	물품보관함	21,000	12,000	9,000	주요 타겟인 외국인 관광객 감소
콘텐츠	살림터	150,000	127,000	23,000	살림터 운영업체 중단/퇴점(3월말)
	디자인놀이터	350,000	350,000	0	-
	디자인박물관	80,000	72,000	8,000	하반기 포스트코로나 프로모션 확대

-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역상권 사용료 인하를 함으로써 사용료 인하의 민간 확산을 견인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¹⁾에 부합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를 감면하는 지원방안(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)을 마련하였음.

1)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, 음식점업 10억원 이하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별표3)

- 이에 따라 DDP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24곳에 대하여 5억 4,182만원의 감면을 확정하였음.

감면대상	관리비 감면액(6개월)	사용료 50% 감면액(6개월)	합 계(단위:원)
노태그 등 24개소	52,190,469	489,636,602	541,827,071원

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코로나19로 인한 자체 수입 감소로(50억) 인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은 사업을 축소 및 변경할 계획을 추진 중으로, 특히 DDP 운영과 관련하여 6월 말까지 대관료 및 일부 운영수입 외에는 세입계획이 없어 하반기 대관에 대한 선수금 등을 임시로 이체해서 고정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.
- 이에 서울디자인재단은 세출감액(15.3억), 재단 내 취소사업 및 예비비 전용(29.2억), 서울시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른 지원액(5.5억)을 추진 중에 있음.

소상공인 임대료·관리비 감면액 출연금 추경(541,827천원)
상반기 취소사업비 및 예비비 전용(2,923,073천원)
비상상황을 반영한 불요불급한 DDP 세출 감축운영(1,534,100천원)

- DDP개관 후 현재까지 운영결과, DDP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운영수입은 평균 150~160억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현재 DDP 시설운영과 34명의 인건비 정도의 운영만 가능한 수준임.

- 앞으로 DDP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DDP자체기획 전시의 운영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간에 DDP 재정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5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0년 3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3) 사무내용
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
-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
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
- 패션·봉제산업 지원사업
-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
- 디자인의 국·내외 교류사업
-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경개요

1) 추경예산 : 541,827천원

※ 총 출연금액 : 34,881,827천원 (기정 출연금액 : 34,340,000천원 포함)

2) 추경필요성

- 재단이 관리수탁하고 있는 DDP는 설립 이래, 시설 임대료,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해 왔으나,
- 코로나19관련 우리시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」 정책에 따라,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%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음.
- 여기에,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객 감소,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DDP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면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한 손실 보전액 541,827천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필요함

3) 출연금 편성 내용

- DDP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: 시설관리비, 시설위탁비, 안전관리사업비 지원

다 .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 개요)

1)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

(옛 동대문운동장 부지(65,232m²))

2) 규모 : 총 면적 86,574m², 지상 4층, 지하 3층

3) 개관일시 : '14. 3. 21

4) 전경 및 위치도



5) DDP 시설 현황 : 5개 공간 18개 시설

알림터	알림1관, 알림2관, 국제회의장, 복합문화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조산업의 런칭 패드, 디자인 포럼 • 디자인·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, 패션쇼, 콘서트, 시사회, 공연 등
배움터	디자인박물관, 디자인전시관, 디자인틀레길, 디자인놀이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·미래로 전파·전승 • 디자인·패션 전문 전시,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
살림터	살림1관, 크레아, 디자인샵 디자인라이브러리, 잔디사랑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·공유, 창조산업 지식·정보 제공 •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, 시민 디자인·브랜드 체험
공 권	갤러리문, 이간수문전시장, 동대문 역사관, 동대문운동장기념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규모 디자인·문화 전시 및 이벤트,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 •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
디자인장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남과 휴식, 방문객 편의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(2020.3.3.-시장방침제41호)

- 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- 2) 손실분 및 환급분 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경과

- 1) 공공 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시장방침 수립 : '20.3.3
- 2)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: '20.3.26
- 3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: '20.3.31
- 4) 코로나19 피해 관련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 : '20.4.28
 - 「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」으로 일괄 상정, “적정”으로 심의 통과
 - 재산관리부서가 지원기준에 따라 자체 임대료 감면 확정 및 승인

라. 감면규모 : DDP 입점업체 24개소

(단위 : 천원)

감면대상	감면임대료(A) (사용료50%)	감면관리비(B)	총액(C) (C=A+B)	비고
24개소	489,637	52,190	541,827	

※ 감면대상 업체

1)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하고 피해사실 입증가능한 경우

· 소 기 업 :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,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 10억이하

· 소상공인 : 소기업 기준 +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10명 미만, 그 외 업종 : 5명 미만)

2) “다중이용시설”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마 . 예산조치 : 2020년도 3차 추경 편성

바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류지원(☎ 2133-2705)